

의안번호	2211849
의 퇴 인	송석준의원
회 답 일	2025.11.6.
추 계 번호	25D409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요양지원을 보조할 경우, 2027~2031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4조 5,851억원(연평균 9,170억원)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3조 2,112억원(연평균 6,42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	참전명예수당의 100%	8,519	8,851	9,178	9,496	9,802	45,846	9,169
	참전명예수당의 70%	5,970	6,193	6,426	6,652	6,867	32,107	6,421
요양지원 보조		1	1	1	1	1	5	1
합계	참전명예수당의 100%	8,520	8,852	9,179	9,497	9,803	45,851	9,170
	참전명예수당의 70%	5,971	6,194	6,427	6,653	6,868	32,112	6,422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	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「민법」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됨(제4항)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3	안 제8조(양로지원)	양로지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함	
4	안 제8조의2(요양지원에 대한	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	

	보조)	배우자에게도 적용함	
5	안 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	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함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2(권리의 보호)	○	—
2	안 제6조의3(생계지원금)	×	법 개정(2025.9.16.)으로 시행 예정(2026.3.17.) 규정 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3	안 제8조(양로지원)	×	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)하고 있으며,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 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 참여군 인이 추가 입소하더라도 추가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4	안 제8조의2(요양지원에 대 한 보조)	○	—
5	안 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 원)	×	고궁 등을 이용할 위험작전 참여군인의 수, 고궁·공원의 요금 감면율 차이, 고궁·공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 로 추계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참전유공자의 유·가족 관련 자료의 부재로 무공수훈자 유배유자율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추계에서는 법 시행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,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기 사망 참전유공자의 추정 배우자 수에 향후 매년 신규 사망하여 참전명예

수당 수급권을 받게 될 참전유공자 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함

-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5.0%, 배우자의 사망률은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7.2%를 적용함

- 개정안은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이 승계될 경우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은 참전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하는 경우와 70%를 지급하는 경우,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계함
- 양로지원의 경우, 양로지원 시설로 보훈원을 운영(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 운영)하고 있으며 입소인원과 상관없이 매년 양로지원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어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입소하더라도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- 고궁 등을 이용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, 고궁·공원의 요금 감면율 차이, 고궁·공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금액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추계대상에서 제외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가.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수급권 승계(안 제6조의2)

(1) 대상자 수

-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4년 연말 기준 12만 190명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8.8% 감소

[표 2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감률
지급인원(명)	173,733	161,577	146,932	132,479	120,190	-8.8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-8.8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감률
지급인원(명)	91,170	83,147	75,830	69,157	63,071	-8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승계 배우자 인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가 감소한 만큼 참전유공자 사망자 수로 가정하고, 사망자 수에 유배우자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추정
- 전년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에 배우자사망률을 적용하고 신규 수권 배우자 수를 더하여 당해연도 수권 배우자 수 누계를 추정
 -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5.0%, 배우자의 사망률은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7.2%를 적용함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수급 배우자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배우자 승계	2027	2028	2029	2030	2031
전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	91,170	83,147	75,830	69,157	63,071
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(A)	8,023	7,317	6,673	6,086	5,550
신규 수권 배우자 발생자 수 ($B=A \times \text{유배우자율}$)	6,015	5,485	5,003	4,562	4,161
누적 수권 배우자 수 ($C_t = C_{t-1} \times \text{사망율} + B$)	137,045	132,663	128,114	123,452	118,724

주: 1.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자 수는 전년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에서 해당연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를 차감하여 산출함

2.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은 무공수훈자 최근 3년 평균 유배우자율 75.0%, 배우자의 사망률은 최근 3년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7.2%를 적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2) 지급단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340	350	390	420	450	7.3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.3%를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고, 승계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와 70%를 지급할 경우 등 두 가지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6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, %)

연도	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 증감률
월 지급액	참전명예수당 의 100%	518	556	597	641	688	7.3
	참전명예수당 의 70%	363	389	418	449	482	7.3

자료: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경우, 2027~2031년 기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4조 5,846억원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3조 2,107억원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배우자 수(명)		137,045	132,663	128,114	123,452	118,724	—
지급단가(천원/월)	참전명예수당의 100%	518	556	597	641	688	—
	참전명예수당의 70%	363	389	418	449	482	—
추가재정소요(억원)	참전명예수당의 100%	8,519	8,851	9,178	9,496	9,802	45,846
	참전명예수당의 70%	5,970	6,193	6,426	6,652	6,867	32,107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요양지원 보조(안 제8조의2)
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요양지원 보조를 적용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
- 2024년 결산 기준 요양지원 보조 월 지급단가는 68,941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.6%의 증가율을 보임

[표 8] 요양지원 보조 현황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합계
소요예산(백만원)	2,060	2,488	3,095	3,529	3,928	—
지급인원(명)	2,657	3,324	3,987	4,333	4,748	—
월 지급단가(원)	64,609	62,375	64,689	67,871	68,941	1.6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요양지원 보조 지급인원에 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
 - 지원대상자 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보조를 받은 인원 비율인 0.1%를 적용하여 산정함
 - 지급단가는 2024년 월 지급단가에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1.6%를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9]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요양지원 보조 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명)	137,045	132,663	128,114	123,452	118,724	—
지급인원(명)	137	133	128	123	119	—
월 지급단가(원)	72,304	73,461	74,636	75,830	77,043	—
추가재정소요(백만원)	119	117	115	112	110	573

주: 지급인원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에 참전유공자 중 요양지원 비율 0.1%를 적용하여 산정함
자료: 국가보훈부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고 요양지원을 보조할 경우, 2027~2031년간 추가재정소요는 승계참전명예수당을 기존 명예수당의 100%를 지급할 경우, 4조 5,851억원(연평균 9,170억원), 기존 명예수당의 70%를 지급할 경우 3조 2,112억원(연평균 6,42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	참전명예수당의 100%	8,519	8,851	9,178	9,496	9,802	45,846	9,169
	참전명예수당의 70%	5,970	6,193	6,426	6,652	6,867	32,107	6,421
요양지원 보조		1	1	1	1	1	5	1
합계	참전명예수당의 100%	8,520	8,852	9,179	9,497	9,803	45,851	9,170
	참전명예수당의 70%	5,971	6,194	6,427	6,653	6,868	32,112	6,422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참전명예수당의 100%와 70% 두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